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상위법인 「지하수법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산금 부과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2. 관계법령

「지하수법」 제30조의2, 제30조의3, 제41조 등

3. 주요골자

가. 가산금 조항 삭제(안 제14조)

○ 조례안 제14조(가산금)

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▶ 상위법인 「지하수법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산금 부과는 적법하지 않음.

4. 검토의견

□ 본 조례 개정건은

- 지하수 이용 구민들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모범인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구민에게 부담지우는 행위는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며
-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실, 세정담당관실을 비롯하여 법률자문위원과 법제처 등 여러기관, 부서의 의견 조회결과 『법에 명시되지 않은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』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
-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단 단서에 「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」고 명시되어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□ 위 조례 개정건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